2020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1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20만원 지급**
	특2급	•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 공직유관단체 임원(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전·현직 초·중·고 교사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공직유관단체 직원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 문 수 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심 사 수 당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원내직원 지급기준 • 2시간 이상 100% 지급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